녹용규격 해설

회분 35%이하, 명칭 「녹용」으로 단일화
대록(엘크)포함, 숫사슴 뿔만 「녹용」 인정

녹용의 기준이 또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27일 녹용의 회분함량을 35.0% 이하로 하고, 대록(엘크)의 뿔도 녹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용은 「매화록, 마록 및 대록(사슴과)의 숫사슴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 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으로 변경됐다.

또 과거 녹용의 회분함량을 25.0%이하로 하고, 25.01%이상 35.0%이하를 녹용각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단일화해 「절단 부위부터 5㎝까지의 부분 : 회분 함량을 35.0%이하」로 변경했다.

식약청의 이와 같은 방침은 녹용의 회분 함량을 25%이하로 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하고, 규정상 동속근연 동물의 뿔까지도 녹용으로 인정해 초래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래스카산 순록의 뿔이 녹용으로 유통됐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숫사슴」이라는 것을 구체화했다.

식약청은 또 녹용의 규격을 좀더 세밀화하기 위해 화녹용은 「주지의 길이는 17~40㎝·둘레는 12㎝ 이상, 주지와 1분지의 간격은 5~10㎝, 주지의 끝에서 1분지까지의 길이는 15㎝ 이하, 1~2개의 분지를 가지며, 주지 및 분지의 끝은 둔한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상을 규정했다.

마녹용 및 대녹용은 「주지의 길이 25~70㎝·둘레 12㎝ 이상, 주지와 1분지와의 간격은 10~25㎝, 주지 끝에서 1분지까지의 길이는 25㎝이하, 1~4개의 분지를 가지며 주지 및 분지의 끝은 둔한 원형으로 되어 있다」로 수정됐다.

그러나 녹용을 길이나 굵기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즉, 한의학에서는 녹용은 완전히 성장한 뿔이 아닌 어린 뿔을 의미하는데 17㎝가 되지 않는다고 녹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주지 및 둘레의 길이를 규정한 것은 녹용을 한 번 절단하고 재생뿔을 두 세 번째 절단한 경우 유효성분의 함량은 크게 떨어지나 크기가 작아도 녹용으로 유통될 수 있고, 아직 자라지도 않은 1~2년생 사슴의 뿔이 녹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또 「주지와 분지의 간격을 제한한 것은 성장일수가 오래된 뿔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이번 식약청의 개정 고시가 어느정도 생산자 의견을 반영한 것을 인정하나,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 2월 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녹용규격 개정고시에 대한 생산자 의견

□ **녹용 정의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① 유사 사슴(순록 등)뿔의 유통을 획책하는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는 대신 "대록(大鹿)"과 "숫사슴"을 분명히 명기한 것은 크게 환영하나

② "매화록(梅花鹿)"을 "꽃사슴(花鹿, 梅花鹿)"으로, "마록(馬鹿)"을 "붉은사슴(赤鹿, 馬鹿)"으로, "대록(大鹿)"을 "큰사슴(大鹿)"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함.

그것은 대한민국 규정이 자국어를 폄하한 사대주의적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사슴 품종이 학명에 포함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구태여 중국 아종을 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말 사슴품종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③ 정의 말미에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을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이다"로 개정한 것은 일본 후생성 내규의 녹용규격(매화록, 마록의 아직 각화 안된 또는 약간 각화된 대각을 건조한것)을 그대로 인용 표기한 것으로, 이는 중국 약전의 기원형상인 "미골화 유각(未骨化 幼角)"과도 배치되므로 "골화 덜 된 뿔(袋角)이다"로 개정해야 함.

④ 또한 "자른다음 말린 것이다"로 표기하므로서 외산 건녹용만 녹용으로 규정하고 사슴에 달린 뿔이나 말리지 않은 생녹용은 녹용에서 배제시켰음.

"녹용"이란 사슴뿔의 한문 표현인데 자연상태의 녹용은 녹용이 아니고 말린 사슴뿔만 녹용으로 개정하여 국산녹용을 배제시키고 있음. 나아가 외산 생녹용의 부정유통(생녹용수입 국내건조)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제약업체에서 원료의약품 용도로 생녹용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원전에 없는 "자른 다음 말린것이다"로 추록한 표현은 즉각 삭제되어야 함.

□ **성상의 문제점**

① 개정 성상을 보면 사슴뿔 가지명은 분지 순위에 따라 1분지 2분지로 호칭하는 것이 순리요 관례인데 마지막 생성 분지부터 역으로 표기, 혼란이 우려되므로 분지순위로 호칭해야 하며

② 화녹용의 성상에 주지와 1분지 간격 5~10cm, 주지끝과 1분지간 길이는 15cm이하, 둘레 12cm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녹용형태의 다양성에 부합치 않은 산술적 수치로 검사의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주지길이 17~40cm는 5세이하의 미숙녹용 배제를 위해 25~40cm이하로 변경하고

③ 적녹용, 대녹용도 주지와 분지간격은 삭제하고 적녹용 주지길이는 30~70cm로, 신설한 대녹용은 50~90cm로 현실화해야 함.

□ **녹용의 회분**

① "회분(절단 부위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회분(채취 부위부터 5cm까지의 부분)"으로 개정해야 함.

② 채취부위와 절단부위의 품질차이를 비교할 때 채취(사슴에서 절각)부위 회분 35%와, 하단 2지 절단부위 회분 35%의 녹용생장 일수차는 7일 이상임. 따라서 채취녹용 보다 절단녹용의 중상대부위 각화(회분)율이 높아짐.

③ 절단 부위란 자른부위를 뜻하므로 늦게 절각(채취)한 저질품을 적정 부위를 절단한후 회분 적합 부위만 수입하므로서 회분 초과부위(하대) 수입 요구를 자초하므로 회분 적합 양질품 생산을 위해 채취(사슴각좌에서 절각)부위 5cm로 개정해야 함.

정부개정고시와 본회 개정안 비교표

구 분	정 부 개 정 고 시	한 국 양 록 협 회 안
정의 (기원)	이 약은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및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사슴과 Cervidae)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다음 말린 것이다.	이 약은 꽃사슴(花鹿, 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붉은사슴(赤鹿, 馬鹿) Cervus elaphus Linne 및 큰사슴(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사슴과 Cervidae)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골화 덜된 뿔이다.
성상	화녹용(花鹿茸) : 이 약은 주지와 분지로 이루어져 주지의 길이는 17~40cm, 둘레는 12cm 이상이고 주지와 1분지의 간격은 5~10cm이며, 주지의 끝에서 1분지까지의 길이는 15cm 이하이고 1~2개의 분지를 가지며, 주지 및 분지의 끝은 둔한 원형으로 되어 있다. 바깥면은 황갈색에서 갈색의 바탕에 적황색에서 갈황색의 부드럽고 짧은 털이 밀생되어 있다. 절단면은 윗쪽으로 갈수록 미세한 구조의 해면상을 이룬다.	화녹용(花鹿茸) : 이 약은 25~40cm이하의 주지에 1~2개의 분지로 이루어지며 주지 채취부위둘레는 10cm이상이고 주지 및 분지의 끝부위는 둥글다. 바깥면은 황갈색~적황색의 부드럽고 짧은 털로 싸여 있다. 절단면은 윗쪽으로 갈수록 아주 미세한 구조의 해면상을 이룬다.
	마녹용(馬鹿茸) 및 대녹용(大鹿茸) : 이 약은 주지와 분지로 이루어져 주지의 길이는 25~70cm, 둘레는 12cm 이상이고 주지와 1분지와의 간격은 10~25cm이며, 주지의 끝에서 1분지까지의 길이는 25cm이하이고 1~4개의 분지를 가지며, 주지 및 분지의 끝은 둔한 원형으로 되어 있다. 바깥면은 황갈색에서 갈색의 바탕에 적황색, 회흑색, 또는 갈황색의 부드러운 털이 밀생되어 있다. 절단면은 윗쪽으로 갈수록 미세한 구조의 해면상을 이룬다.	적녹용(赤鹿茸) 및 대녹용(大鹿茸) : 이 약은 적녹용 30~70cm이하, 대녹용 50~90cm이하의 주지에 4개이하의 분지로 이루어지며 주지 채취부위 둘레는 13cm이상이고 주지 및 분지의 끝부위는 둥글다. 바깥면은 황갈색~갈색 또는 회흑색의 부드러운 털로 싸여 있다. 절단면은 윗쪽으로 갈수록 미세한 구조의 해면상을 이룬다.
회분	회분(절단 부위부터 5cm까지의 부분): 35.0%이하	회분(채취 부위부터 5cm까지의 부분) : 35.0%이하